

2020학년도 한밭대학교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1)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총괄표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입학모집 요강에 제시한 자격기준 과목명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교 과 외
	구 분	전형명					인문사회			수 학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논술 등 필답고사	-	-	-				해당없음				
면접· 구술고사	수 시 모 집	학생부교과(학석사)	전체				해당없음				
		학생부종합					해당없음				
		지역인재					해당없음				
		국가보훈대상자					해당없음				
		특수교육대상자					해당없음				
	정 시 모 집	평생학습자(주/야)					해당없음				
		산업체경력					해당없음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야간)					해당없음				
	정 시 모 집	평생학습자(주/야)					해당없음				
		산업체경력(야간)					해당없음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야간)					해당없음				

* 우리대학의 면접고사는 교과지식과 관련이 없이
제출서류(학생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종합·정성 평가를
함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II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1)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판단기준		이행 점검결과
	항목	세부내용	
대학별고사 실시 관련 이행 사항 점검	1.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재	① 기간 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공개 (문항과 답안 공개의 충실성)	<input type="radio"/>
	2.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항목 준수	② 문항 총괄표 작성의 충실성	
		③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작성의 충실성	해당없음
		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	
	3. 대학별고사 입학전형 선행학습 자체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⑤ 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 여부	<input type="radio"/>
		⑥ 현직 고등학교 교사 포함 여부	<input type="radio"/>

(2)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 규정명 :한밭대학교 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에 관한 지침
- 제정일 : 2015. 3. 26. (제2차 일부개정 2017. 6. 8. 지침 245호)
- 주요내용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자체체 영향평가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자체영향평가의 정의

· 자체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명시

· 회의소집 및 의결, 수당 등 지급, 시기 및 반영, 분과위원회, 결과 공개 방법 등을 규정

- 상세규정 : 「VI.부록」 참조

(3) 선행학습 자체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 내부위원 구성(71.43%) : 입학본부 3명(당연직 포함), 학내 전임교수 2명
- 외부위원 구성(28.57%) : 고등학교 교사 2명

직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입학본부	입학본부장	박○○	당연직
위원	입학본부	입학부본부장	김○○	당연직
위원	입학본부	입학과장	윤○○	임명직
위원	인문교양학부	교수	진○○	임명직
위원	공과대학	교수	신○○	임명직
위원	○○고등학교	교사	이○○	임명직(외부)
위원	○○고등학교	교사	김○○	임명직(외부)

(4) 2020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내용	기간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구성	2020년 2월 ~ 3월
대학별 고사현황 및 면접고사 문항 분석	2020년 2월 ~ 3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2020년 3월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개최 - 자체영향평가보고서 심의, 보완 및 확정	2020년 3월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및 홈페이지 게재	2020년 3월

III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 해당없음
- 한밭대학교 대학별고사 현황

대학별 고사 유형	운영 여부	영향평가 대상 여부	비고
논술고사	X	X	
적성고사	X	X	
실험고사	X	X	
면접·구술고사	O	O	교과지식과 관련없음
교직적성·인성고사	X	X	
신체검사	X	X	
실기고사	O	X	실기고사제외
기타	X	X	

IV 문항 분석 결과 요약

(1) 문항분석 결과요약표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입학모집 요강에 제시한 자격기준 과목명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교 과 외
	구분	전형명					인문사회		수학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논술 등 필답고사	해당없음									
면접· 구술고사	해당없음									

(2) 면접고사 면접문항 분석 결과요약

- 평가대상의 적절성 : 적절함
- 평가절차의 적절성 : 적절함
- 면접문제 선행학습유발 요인 유무 : 없음

(3) 2020학년도 면접고사 면접문항 예시

구분	면접 문항	
수시모집	공통 주제	이 학과에 지원한 동기와 지원학과와 관련한 자신만의 강점은 무엇인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예비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한 후 1~4학년까지 각 학년별 대학 생활계획에 대해 발표해주세요 - 본인이 진행했던 봉사 활동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과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고등학교 시절 동안 1개월 이상 꾸준히 노력해 본 것에 대해 발표해주세요 - 한밭대학교의 인재상을 발표해 주세요 - 불편한 문제를 지원자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해결해 본 것이 있나용?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정시모집	상동	

V 대학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노력

- 본 대학 면접고사는 교과 지식과 관련 없는 종합·정성평가로 진행되며 제출서류(학생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 선행학습과 관련이 없음
- 본 대학은 면접고사에 교과지식관련 문항을 출제하지 않음으로써 선행학습 유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매년 선행학습 자체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VI 부록

-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전문

한밭대학교 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 2015. 3.26.]

(제1차 일부개정 2015. 12. 10. 지침 제160호)

(제2차 일부개정 2017. 6. 8. 지침 제245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한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 평가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영향평가의 정의) ① “자체영향평가”란 대학입학전형에서 본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출제범위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체능 계열의 실기고사는 자체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에도 예외 사항에 해당 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자체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자체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입학본부장을 위원장, 입학부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5. 12. 10.>, <개정 2017. 6. 8.>

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며 전임교원, 교내전문가, 교외전문가 중에서 구성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입학2팀장이 된다.<개정 2015. 12. 10.>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체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본교 각종 고사의 선행학습 유발여부에 대한 사항
3. 자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방지 방안

4.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차년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체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 ① 자체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수시 및 정시)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자체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자체영향평가의 결과 공시) 자체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10조(기타) 자체영향평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15. 3. 26.)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제160호 2015. 12. 1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제245호, 2017. 6. 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개정) ①은 생략

② 「한밭대학교 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입학관리본부장”을 “입학본부장”으로, “입학관리부본부장”을 “입학부본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2020. 3. 23.

한밭대학교 총장